

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
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계획서의 제출 등) ① 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명
2.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
3. 사업대상
4. 사업의 내용, 사업 기간 및 추진 일정
5.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체계(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, 그 계획에 대한 사항도 포함)
6. 사업의 성과목표, 성과평가 지표·방법·시기 등 내용
7. 사업비, 세부 산출내역 및 사업비 조달 계획
8. 민간 운영기관 현황(상호, 소재지, 연락처, 재무현황, 조직·인원현황,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사업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등)

9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5항의 실시협약 사항, 법 제8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법 제7조의 사업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, 도면 등을 첨부할 수 있다.

③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서의 제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 전까지 제출기간 연장 사유와 30일 범위의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, 보완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의 해지 및 변경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약 해지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하며, 심의·의결 전후에 걸쳐 민간 운영기관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제4조(평가기관 자격 등)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.

1. 성과 평가 관련 직전연도 2개년 간의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을 것
2.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

용하고 있을 것

제5조(재협약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이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, 법 제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

평가기관의 전담인력 요건(제4조제2호 관련)

1. 고등학교를 졸업(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 및 평가업무 또는 성과 측정 및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
2.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 및 평가업무 또는 성과 측정 및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(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)이 6년 이상인 사람
3.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 및 평가업무 또는 성과 측정 및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(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)이 4년 이상인 사람
4.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과 측정 및 평가업무 또는 성과 측정 및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(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)이 2년 이상인 사람